

**가상계좌 제휴 및 중계업무 계약서 개정대비표**

1. 개정시행일 : 2013. 07. 26

2. 개정내용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>주식회사 하나은행(이하"<u>갑</u>"이라 한다)과 0000(주) (이하"<u>을</u>"이라 한다) 은 가상계좌관련 전자금융 업무제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.</p> <p>제1조(목적) 본 계약은 "<u>갑</u>"과 "<u>을</u>"이 가상계좌를 활용한 전자금융서비스의 중계업무 및 가상계좌 마케팅 등의 제휴에 대한 내용을 명시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</p> <p>제2조(용어의 정의) (문구추가) ①제휴기관:"<u>갑</u>"과 가상계좌 업무제휴를 통하여 부여된 가상계좌를 대고객 등의 업무에 이용하는 기업 또는 단체. ②가상계좌:"<u>갑</u>"과 제휴한 "제휴기관"의 모계좌에 종속하는 자계좌로서 "제휴기관"의 고객에게 부여한 계좌로 동 가상계좌의 예금주는 "제휴기관"임 ③중계시스템:"<u>갑</u>"과 "제휴기관"의 업무를 전산처리함에 있어 "<u>을</u>"이 "<u>갑</u>"의 승인하에"제휴기관"에 실시간 전문으로 중계 및 대행하기 위하여 구축한 시스템. ④중계업무:"<u>을</u>"이 중계시스템을 통하여 "제휴기관"에 데이터 전송 등을 제공하는 행위. ⑤전용브라우저:가상계좌의 거래내역을 "제휴기관"이 실시간 조회할 수 있도록 "<u>을</u>"이 제공하는 인터넷 브라우저</p>	<p>주식회사 하나은행(이하"<u>은행</u>"이라 한다)과 0000(주) (이하"<u>중계회사</u>"라 한다)은 가상계좌관련 전자금융 업무제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.</p> <p>제1조(목적) 본 계약은 "<u>은행</u>"과 "<u>중계회사</u>"가 가상계좌를 활용한 전자금융서비스의 중계업무 및 가상계좌마케팅 등의 제휴에 대한 내용을 명시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</p> <p>제2조(용어의 정의) <u>본 계약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u> 1.제휴기관:"<u>은행</u>"과 가상계좌 업무제휴를 통하여 부여된 가상계좌를 대고객 등의 업무에 이용하는 기업 또는 단체. 2.가상계좌:"<u>은행</u>"과 제휴한 "제휴기관"의 모계좌에 종속하는 자계좌로서, "제휴기관"의 고객에게 부여한 계좌로 동 가상계좌의 예금주는 "제휴기관"임 3.중계시스템:"<u>은행</u>"과"제휴기관"의 업무를 전산처리함에 있어 "<u>중계회사</u>"가 "<u>은행</u>"의 승인하에"제휴기관"에 실시간 전문으로 중계 및 대행하기 위하여 구축한 시스템. 4.중계업무:"<u>중계회사</u>"가 중계시스템을 통하여 "제휴기관"에 데이터 전송 등을 제공하는 행위. 5.전용브라우저:가상계좌의 거래내역을 "제휴기관"이 실시간 조회할 수 있도록 "<u>중계회사</u>"가 제공하는 인터넷 브라우저</p>	<p>"갑"과"을"을 "은행"과"중계회사"로 명칭 변경</p> <p>"갑"과"을"을 "은행"과"중계회사"로 명칭 변경</p> <p>문구추가 "갑"과"을"을 "은행"과"중계회사"로 명칭 변경</p>



**가상계좌 제휴 및 중계업무 계약서 개정대비표**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>연결된 경우 “을”은 "제휴기관"의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</p> <p>②"갑"은 가상계좌서비스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"을"의 중계시스템을 통하여 연결된 "제휴기관"의 가상계좌 거래자료를 "을"에게 제공하기로 하며, “제휴기관”이 지정한 계좌로의 송금의뢰를 “을”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요청할 경우 이를 처리하기로 한다..</p> <p>③본 계약상의 업무이행과 관련하여 “갑”과 “을”은 전용선으로 연결하고 “을”과 제휴기관은 TCP/IP(인터넷망/전용선)방식, 전용선 또는 가상계좌 전용 Browser방식으로 연결하며, 그 연결방식은 제휴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</p> <p>④”갑”과 “을”은 시스템이나 서비스의 변경, 추가, 삭제 또는 보안관련 개선등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조하기로 한다</p> <p>⑤기타 서비스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"갑"과 "을"이 따로 협의하여 결정한다</p> <p>제 6조(중계업무의 책임범위)</p> <p>①입금내역의 중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에 대한 분쟁 및 민원에 대해서는 신의원칙에 따라 상호협력하되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.</p> <p>②”갑”의 전산시스템 영역범위 내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“갑”이 부담하고 “을”의 전산시스템 영역범위 내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“을”이 부담하기로 한다.</p> <p>③"을"은 "갑"과 “제휴기관” 간의 가상계좌 서비스 데이터 중계업무를</p>	<p>중계시스템을 통하여 연결된 경우 “중계회사”는 "제휴기관"의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</p> <p>②"은행"은 가상계좌서비스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"중계회사"의 중계시스템을 통하여 연결된 "제휴기관"의 가상계좌 거래자료를 "중계회사"에게 제공하기로 하며, “제휴기관”이 지정한 계좌로의 송금의뢰를 “중계회사”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요청할 경우 이를 처리하기로 한다..</p> <p>③본 계약상의 업무이행과 관련하여 “은행”과 “중계회사”는 전용선으로 연결하고 “중계회사”와 제휴기관은 TCP/IP(인터넷망/전용선)방식, 전용선 또는 가상계좌 전용 Browser방식으로 연결하며, 그 연결방식은 제휴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</p> <p>④”은행”과 “중계회사”는 시스템이나 서비스의 변경, 추가, 삭제 또는 보안관련 개선등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조하기로 한다</p> <p>⑤기타 서비스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"은행"과 "중계회사"가 따로 협의하여 결정한다</p> <p>제 6조(중계업무의 책임범위)</p> <p>①입금내역의 중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에 대한 분쟁 및 민원에 대해서는 신의원칙에 따라 상호협력하되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.</p> <p>②”은행”의 전산시스템 영역범위 내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“은행”이 부담하고 “중계회사”의 전산시스템 영역범위 내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“중계회사”가 부담하기로 한다.</p> <p>③"중계기관"은 "은행"과 “제휴기관” 간의 가상계좌 서비스 데이터</p>	<p>"로 명칭 변경</p> <p>갑"과"을"을 "은행"과"중계회사"로 명칭 변경</p>

**가상계좌 제휴 및 중계업무 계약서 개정대비표**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>위하여 “갑” 과 전용회선을 설치,관리하여야 하며, 이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“을” 의 부담으로 한다</p> <p>④본 중계서비스 지원을 위한 시스템개발 및 구축은 “을” 의 부담과 책임으로 운영한다</p> <p>⑤”을” 은 제휴기관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전산시스템과 전문인력을 보유하여야 하며, 고객응대를 위한 전문 상담인력의 배치 등을 통해 민원발생의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제 7조(수수료 배분기준 및 징수방법)</p> <p>①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휴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수수료의 총액은 “을”의 가상계좌 중계업무 및 마케팅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배분하기로 한다.</p> <p>1. “갑”이 마케팅하고, “갑”과 “제휴기관”간 서비스를 “을”의 중계시스템에 의하여 중계하는 제휴기관 업무  “갑” : “을” =        :</p> <p>2. “을”이 마케팅하고, “갑”과 “제휴기관”간 서비스를 “을”의 중계시스템에 의하여 중계하는 제휴기관 업무  “갑” : “을” =        :</p> <p>②” 갑” 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의 “을” 이 받을 수수료를 익월 8일(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)까지 “을” 에게 통지하고 익월10일(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) “을” 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.</p> <p>제 8조(계약효력 및 계약기간) (내용생략)</p>	<p>중계업무를 위하여 “은행” 과 전용회선을 설치,관리하여야 하며, 이에 따르는 비용은 “중계회사” 의 부담으로 한다 .</p> <p>④본 중계서비스 지원을 위한 시스템개발 및 구축은 “중계회사” 의 부담과 책임으로 운영한다</p> <p>⑤” 중계회사” 는 제휴기관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전산시스템과 전문인력을 보유하여야 하며, 고객응대를 위한 전문 상담인력의 배치 등을 통해 민원발생의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제 7조(수수료 배분기준 및 징수방법)</p> <p>①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휴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수수료의 총액은 “중계회사”의 가상계좌 중계업무 및 마케팅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배분하기로 한다.</p> <p>1. “은행”이 마케팅하고, “은행”과 “제휴기관”간 서비스를 “중계회사”의 중계시스템에 의하여 중계하는 제휴기관 업무  “은행” : “중계회사” =        :</p> <p>2. “중계회사”이 마케팅하고, “은행”과 “제휴기관”간 서비스를 “중계회사”의 중계시스템에 의하여 중계하는 제휴기관 업무  “은행” : “중계회사” =        :</p> <p>②” 은행” 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의 “중계회사” 가 받을 수수료를 익월 8일(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)까지 “중계회사” 에게 통지하고 익월10일(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) “중계회사” 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.</p> <p>제 8조(계약효력 및 계약기간) (좌동)</p>	<p>"갑"과"을"을 "은행"과"중계회사"로 명칭 변경</p>

**가상계좌 제휴 및 중계업무 계약서 개정대비표**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>제 9조(계약해지)</p> <p>①본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지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상호간에 서면 합의한 경우</li> <li>2. 계약상대방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</li> <li>3. 계약상대방이 파산, 회생, 기업개선약정을 신청 또는 체결하거나, 채권자 또는 법원에 의해 관리인 등이 선임되는 등 신용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</li> <li>4. "갑"의 경영정책상의 사유, 관련법령의 제·개정, 금융감독기관의 지시 등에 의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하게 된 경우나, <u>금융환경의 급변으로 본 계약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.</u></li> <li>5. 기타 "갑" 또는 "을"이 금융감독기관이 정한 금융관계 법규위반 등으로 신용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</li> </ol> <p>②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상대방에 서면통지로서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하되, 전항 2호인 경우에는 사전 이행최고 등을 거쳐 이행이 없으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, 통보 1개월 후에는 해지할 수 있다.</p> <p>제10조(비밀 및 보안유지)</p> <p>① "갑" 과 "을" 은 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예금주의 비밀보장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다</p> <p>② "갑" 과 "을" 은 본 계약체결 및 이행으로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 및 정보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계약종료 이후에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, 외부유출로 인한 민형사상 일체의 문제는 유출한 측에 책임이 있으며</p>	<p>제 9조(계약해지)</p> <p>①본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지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상호간에 서면 합의한 경우</li> <li>2. 계약상대방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</li> <li>3. 계약상대방이 파산, 회생, 기업개선약정을 신청 또는 체결하거나, 채권자 또는 법원에 의해 관리인 등이 선임되는 등 신용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</li> <li>4. "은행" 의 경영정책상의 사유, 관련법령의 제·개정, 금융감독기관의 지시 등에 의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하게 된 경우. <u>(내용삭제).</u></li> <li>5. 기타 "은행" 또는 "<u>중계회사</u>"가 금융감독기관이 정한 금융관계 법규위반 등으로 신용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</li> </ol> <p>②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상대방에 서면통지로서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하되, 전항 2호인 경우에는 사전 이행최고 등을 거쳐 이행이 없으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, 통보 1개월 후에는 해지할 수 있다.</p> <p>제10조(비밀 및 보안유지)</p> <p>① "은행" 과 "<u>중계회사</u>" 는 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예금주의 비밀보장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다</p> <p>② "<u>은행</u>" 과 "<u>중계회사</u>" 는 본 계약체결 및 이행으로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 및 정보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계약종료 이후에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, 외부유출로 인한 민형사상 일체의 문제는 유출한 측에 책임이 있으며</p>	<p>고객에게 불리한 조항 삭제</p> <p>갑"과"을"을 "은행"과"중계회사"로 명칭 변경</p> <p>"갑"과"을"을 "은행"과"중계회사"로 명칭 변경</p>

**가상계좌 제휴 및 중계업무 계약서 개정대비표**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>유출한 측은 이에 따른 비용 및 손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.</p> <p>③” <u>갑</u>” 과” <u>을</u>” 은 상호 정보교환을 통하여 인지 또는 획득한 제반사항을 본 업무처리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</p> <p>④” <u>갑</u>” 과” <u>을</u>” 은 각자의 지정 또는 이에 준하는 범위내에서 인가되지 아니한 자가 이 계약에 의한 가상계좌 전산망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보안체제를 유지해야 한다</p> <p>제11조(손해배상책임) "갑"과 "을"은 본 계약상의 제 의무위반, 고의 또는 과실,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등 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,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</p> <p>제12조(면책사항) ①” <u>갑</u>” 의 책임이 아닌 통신기기 및 회선장애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업무지연이나 불능에 대하여 “<u>갑</u>” 은 책임을 면하며, 쌍방이 합의하거나 정한 방법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“<u>갑</u>” 과 ” <u>을</u>” 은 그 책임을 면하기로 한다</p> <p>②본 계약에 의한 업무 처리시 “<u>을</u>” 의 과실및 전산오류로 인하여 제휴기관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“<u>을</u>” 은 이로 인하여 “<u>갑</u>” 에게 생긴 손해를 전액 배상한다.</p>	<p>유출한 측은 이에 따른 비용 및 손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.</p> <p>③” <u>은행</u>” 과” <u>중계회사</u>” 는 상호 정보교환을 통하여 인지 또는 획득한 제반사항을 본 업무처리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</p> <p>④” <u>은행</u>” 과” <u>중계회사</u>” 는 각자의 지정 또는 이에 준하는 범위내에서 인가되지 아니한 자가 이 계약에 의한 가상계좌 전산망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보안체제를 유지해야 한다</p> <p>제11조(손해배상책임) "은행"과 "중계회사"는 본 계약상의 제 의무위반, 고의 또는 과실,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등 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,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</p> <p>제12조(면책사항) ①” <u>은행</u>” 의 책임이 아닌 통신기기 및 회선장애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업무지연이나 불능에 대하여 “<u>은행</u>” 은 전부 또는 일부의 책임을 면할 수 있으며, 쌍방이 합의하거나 정한 방법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“<u>은행</u>” 과 ” <u>중계회사</u>” 는 그 책임을 면하기로 한다</p> <p>②본 계약에 의한 업무 처리시 “<u>중계회사</u>” 의 과실및 전산오류로 인하여 제휴기관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“<u>중계회사</u>” 는 이로 인하여 “<u>은행</u>” 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한다.</p>	<p>갑"과"을"을 "은행"과"중계회사" "로 명칭 변경</p> <p>고객에게 불리한 조항 수정 "갑"과"을"을 "은행"과"중계회사" "로 명칭 변경</p>

**가상계좌 제휴 및 중계업무 계약서 개정대비표**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제13조(양도 및 재위탁금지) (내용생략)	제13조(양도 및 재위탁금지) (좌동)	
<p>제 14조(신의성실 및 청렴계약)</p> <p>① "갑"과 "을"은 본 계약을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행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"갑"과 "을"은 본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상대방의 계약관련 임직원에게 금품, 향응등 접대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하며, 동 제공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해지등 불이익 처분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익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</p>	<p>제 14조(신의성실 및 청렴계약)</p> <p>① "은행"과 "중계회사"는 본 계약을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행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"은행"과 "중계회사"는 본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상대방의 계약관련 임직원에게 금품, 향응등 접대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하며, 동 제공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해지등 불이익 처분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익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</p>	갑"과"을"을 "은행"과"중계회사" "로 명칭 변경
<p>제15조(준용사항)</p> <p>업무와 관련된 각각의 대상계좌에 대한 개별적인 업무처리는 대상예금의 거래약관을 준용하고 “갑” 이외의 타 금융기관에서의 자금이체는 금융결제원의 전자금융공동망 (타행환공동망, CD공동망 포함) 업무규약 및 세부 처리지침을 준용하기로 한다</p>	<p>제15조(준용사항)</p> <p>업무와 관련된 각각의 대상계좌에 대한 개별적인 업무처리는 대상예금의 거래약관을 준용하고 “은행” 이외의 타 금융기관에서의 자금이체는 금융결제원의 전자금융공동망 (타행환공동망, CD공동망 포함) 업무규약 및 세부 처리지침을 준용하기로 한다</p>	갑"과"을"을 "은행"과"중계회사" "로 명칭 변경
<p>제16조(비상계획수립)</p> <p>① "을"은 가상계좌서비스를 중계함에 있어 “을”의 전산시스템이 화재, 홍수, 해킹등의 재난에 의하여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파산, 회사정리등 도산으로 인하여 서비스가 중단되는등 형태별 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</p> <p>② "을"은 “갑”과의 중계업무를 운영함에 있어 재난 상황에도 업무가 가능하도록 “을”의 전산시스템에 대한 백업장비를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하며, “갑”의 백업자료 요청시 제공하여야 한다.</p>	<p>제16조(비상계획수립)</p> <p>① "중계회사"는 가상계좌서비스를 중계함에 있어 “중계회사”의 전산시스템이 화재, 홍수, 해킹등의 재난에 의하여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파산, 회사정리등 도산으로 인하여 서비스가 중단되는등 형태별 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</p> <p>② "중계회사"는 “은행”과의 중계업무를 운영함에 있어 재난 상황에도 업무가 가능하도록 “중계회사”의 전산시스템에 대한 백업장비를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하며, “은행”의 백업자료 요청시 제공하여야 한다.</p>	갑"과"을"을 "은행"과"중계회사" "로 명칭 변경

**가상계좌 제휴 및 중계업무 계약서 개정대비표**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>③” <u>갑</u>”은 “<u>을</u>”이 수립한 비상사태 대비 운영계획에 대해 주기적(분기1회)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“<u>을</u>”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</p> <p>④” <u>갑</u>”은 “<u>을</u>”이 수립한 비상계획에 대한 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모의훈련 결과 문제가 발생될 경우 비상계획을 보완하여” <u>갑</u>”에게 보완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</p> <p>제 17조(관리감독)</p> <p>①” <u>갑</u>”은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관련금융감독기관의 방침에 따라 “<u>을</u>”의 업무운영상태 및 보안상태 등에 대하여 수시 또는 주기적으로 점검 및 자료를 요청을 요구할 수 있으며, “<u>을</u>”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</p> <p>②” <u>갑</u>”은 “<u>을</u>”에 대한 재무건전성을 1회이상 평가하여 재무상태 악화에 따른 도산에 대비하고 주요 경영활동에 대해 모니터링 실시할 수 있고, 서비스 품질수준 평가를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“<u>을</u>”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</p> <p>③” <u>을</u>”은 금융감독원장이 전자금융업무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</p> <p>④” <u>을</u>”은 “<u>갑</u>” 또는 금융감독기관의 관리감독 점검결과 문제가 발견될 경우 이를 즉시 시정하고 그 시정내용을 “<u>갑</u>”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제 18조~제 19조(내용생략)</p>	<p>③” <u>은행</u>”은 “<u>중계회사</u>”가 수립한 비상사태 대비 운영계획에 대해 주기적(분기1회)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“<u>중계회사</u>”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</p> <p>④” <u>은행</u>”은 “<u>중계회사</u>”가 수립한 비상계획에 대한 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모의훈련 결과 문제가 발생될 경우 비상계획을 보완하여” <u>은행</u>”에게 보완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</p> <p>제 17조(관리감독)</p> <p>①” <u>은행</u>”은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관련금융감독기관의 방침에 따라 “<u>중계회사</u>”의 업무운영상태 및 보안상태 등에 대하여 수시 또는 주기적으로 점검 및 자료를 요청을 요구할 수 있으며, “<u>중계회사</u>”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</p> <p>②” <u>은행</u>”은 “<u>중계회사</u>”에 대한 재무건전성을 1회이상 평가하여 재무상태 악화에 따른 도산에 대비하고 주요 경영활동에 대해 모니터링 실시할 수 있고, 서비스 품질수준 평가를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“<u>중계회사</u>”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</p> <p>③” <u>중계회사</u>”는 금융감독원장이 전자금융업무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</p> <p>④” <u>중계회사</u>”는 “<u>은행</u>” 또는 금융감독기관의 관리감독 점검결과 문제가 발견될 경우 이를 즉시 시정하고 그 시정내용을 “<u>은행</u>”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제 18조~제 19조(좌동)</p>	<p>갑"과"을"을 "은행"과"중계회사"로 명칭 변경</p>

**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: 적용**